

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

당사는 당첨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 자격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.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- ※ 부적격 확정 당첨자는 검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약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■ 서류접수 기간 : 2022.09.21(수) ~ 2022.09.25(일) / 시간 - 10:00 ~ 17:00까지

■ 서류접수 장소 : 거제 한신더휴 견본주택(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202-1)

■ 구비서류

구분	발급대상	제출서류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서류	청약자	신분증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
		주민등록표등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포함' 발급
		주민등록표초본	·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포함' 발급
		가족관계증명서	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	출입국사실증명원	·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 설정하여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, 기록대조일(출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.08.22)
	혼인관계증명서	· 혼인신고일 확인 경우(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)	
청약자 및 세대원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(청약신청자)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제출 '상세'로 발급	
	소득증빙서류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 존·비속의 소득 입증서류)	
추가서류 (해당자)	부동산소유현황	부동산소유현황	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-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-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		등기사항전부증명서	· 상기 부동산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
	주거채 청약자 및 세대원	공시가격 증명 서류	· 상기 부동산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, 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 인쇄[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] → "이하 국토교통부" *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」) 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: 국토교통부 → 주택공시가격,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*오피스텔, 상가 : [건물분]출택스 → 조회/발급 → 기타조회 → 기준시가조회 →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[토지분]국토교통부 → 개별공시지가 *토지 : 국토교통부 → 개별공시지가
		재산세 납부내역	· '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'에 따른 해당 서류 * 소형·저가 주택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확인원,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) 및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(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) ·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
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	
	가족관계증명서	·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'상세'로 발급	
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·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제출 *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. *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	
청약자 또는 배우자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· 임신의 경우(견본주택 비치)	
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· 입양의 경우	
청약자 및 세대원	비사업자확인각서	·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작성(견본주택 비치)	
제3자 대리인 신청인	청약자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· '본인'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		위임장	· 청약자(본인)의 인감도장 날인 (견본주택에 비치)
대리인	신분증, 도장(서명)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)	
부적격 통보 받은 자	해당주택	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·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·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· '소형·저가주택 등' 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·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당첨사실 소명자료	·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
■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

구분	발급대상	제출서류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단신부임	청약자	해외체류관련 증명 서류	·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· 해외 취업자 및 사업제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·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	출입국사실증명원	· 배우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청약자 및 배우자 등)에 등재된 세대원 및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 설정하여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, 기록대조일(출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.08.22)
	청약자 및 세대원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·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-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2.08.22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※ **주민등록표등본**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'전체포함' 및 '상세' 로 발급

※ 정당한 당첨자(적격여부)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
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확인 서류안내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

공급유형	구분	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(2022년 적용)	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	
소득 기준 구분	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~6,208,934원	~7,200,809원	~7,326,072원	~7,779,825원	~8,233,578원	~8,687,331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초과 ~ 120% 이하	6,208,935원~ 7,450,721원	7,200,810원~ 8,640,971원	7,326,073원~ 8,791,286원	7,779,826원~ 9,335,790원	8,233,579원~ 9,880,294원	8,687,332원~ 10,424,797원
	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초과 ~ 140% 이하	6,208,935원~ 8,692,508원	7,200,810원~ 10,081,133원	7,326,073원~ 10,256,501원	7,779,826원~ 10,891,755원	8,233,579원~ 11,527,009원	8,687,332원~ 12,162,263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초과 ~ 160% 이하	7,450,722원~ 9,934,294원	8,640,972원~ 11,521,294원	8,791,287원~ 11,721,715원	9,335,791원~ 12,447,720원	9,880,295원~ 13,173,725원	10,424,798원~ 13,899,730원
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40% 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8,692,509원~	10,081,134원~	10,256,502원~	10,891,756원~	11,527,010원~	12,162,264원~	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60% 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9,934,295원~	11,521,295원~	11,721,716원~	12,447,721원~	13,173,726원~	13,899,731원~	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 초과 시 일반공급 20%(상위소득)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]을 선택하셔야 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추첨제 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 (3.31억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
■ 자산보유기준

구분	자산보유 기준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				
부동산 (건물+토지)	3.31억원 이하	건축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
	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					
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			
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										
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									
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종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(개별공시지가 기준) 												

■ 자산보유 확인서류

해당 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'부동산소유현황' 이 있는 경우	필수	- 부동산소유현황(세대원 각각 발급)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(*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)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	- 등기소(대법원인터넷등기소 포함) - 행정복지센터
	해당자	- 공동(개별)주택공시가격 확인원(*소유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상 주택인 경우) - 개별공시지가 확인원(*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,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인 경우) -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(*위택스 → 지방세정보 →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	- 행정복지센터 - 위택스
'부동산소유현황' 이 없는 경우	필수	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'부동산소유현황' 조회결과 화면을 인쇄하여 제출	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